

의안번호	2206240
의 퇴 인	송재봉 의원
회 답 일	2024. 12. 6.
추계번호	24D571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 중 상시 구성원 수를 현행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변경함	의무규정
2	안 제4조(등록)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 (현행 시행령)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걸쳐 있고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개정안)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고 1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조(등록)	

2. 상세 사유

□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 확대(안 제2조)

- 개정안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¹⁾ 중 상시 구성원 수에 대한 요건을 현행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1) 현행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의 장에게 등록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 지원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현행법²⁾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³⁾ 또는 시·도지사나 특별시의 장은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인 등록비영리민간단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지원금이 증가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등록할 비영리민간단체의 수, 추가로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가능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조건 완화(안 제4조)

- 현행법⁴⁾ 및 시행령⁵⁾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①사업 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고, ②2개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로 정하고 있음
 - － 이외의 단체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2) 현행법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별시의 장은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3) 행정안전부는 세부사업 비영리민간단체지원(1140-300)사업으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등록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3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4) 현행법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별시"라 한다)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별시의 장은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별시의 장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현행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려는 비영리민간단체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사무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민간단체의 사무소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별시"라 한다)에만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범위가 해당 특별시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별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5. (생략)

②~⑤ (생략)

- 개정안에 따라 현재 시·도지사나 특례시장에게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할 경우, 국가지원금 증가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각각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이 상이하여 지원 주체간 지원금의 차액만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시·도지사나 특례시장에게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단체의 수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